【 동산종합보험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종합/기업성 · 가계성

2. 보험종목의 명칭 : 동산종합보험

3. 보험의 목적
   가.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나. 선박, 적하, 항공기, 내륙운송화물 또는 해양관련 재물 및 이와 관련되는 피보험이익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또는 3년 내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분납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가. 보험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3항에서 정한 계약자특성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할증은 “보험료의 할인·할증기준”에 따른다.
   나. 자동대출납입 : 해당없음
   다. 보험료의 반환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른다.
   마. 보험계약대출 :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바.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만 부가할 수 있다.
   사.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한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

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아.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관련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음